



시 험 확 인 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 11 조제 2 항,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3 항(같은 조 제 5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시험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.

1. 시료내용

시 료 명	LG 하우시스 Z:IN 인테리어필름 NW	신	청	자	권유리
접 수 번 호	W282-17-00013	시 료	채 취	장 소	LG 하우시스 울산공장 물류창고
시료채취일시	2017 년 10 월 12 일	접 -	수 일	자	2017 년 10 월 12 일
시료채취방법	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관련 지침	검	나 목	· 적	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

대상건축자재 [] 접착제, [] 페인트, [] 실란트(sealant), [] 퍼티(putty), [v] 벽지, [] 바닥재, [] 기타()

2.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

가. 검사결과 종합

판 정	적 합
기준 초과항목	없 음

나. 항목별 검사결과

검사항목	기 준(단위 : mg/m²·h)	시험 결과(단위 : mg/m²· h)
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	4.0 이하	0.163
톨루엔(Toluene)	0.08 이하	0.063
폼알데하이드(Formaldehyde)	0.02 이하	0.007

2017년 11월 7일

FITI시험연구원장을 원원하고

※ 문서 확인 번호: CU7Q-GM86-6K7D ※

(홈페이지에 접속 후 "성적서확인"메뉴에서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
e-DOCUMENT SERVICE

- 이 성적서는 FITI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홍보, 선전, 광고 및 소송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- 이 성적서는 KOLAS 인정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.